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71

발의연월일: 2025. 2. 11.

발 의 자:김태선·복기왕·이용우

한민수ㆍ허 영ㆍ김태년

박홍배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박 정・김주영・김영배

박균택 · 김남근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,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,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학·연구기관·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·조사·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·전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 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(안 제35조의5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복제 · 전송할 수 있다.

제35조의5를 제35조의6으로 하고,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35조의6(종전의 제35조의5)제1항 중 "제35조의4"를 "제35조의5"로 한다.

- 제35조의5(교육·조사·연구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·전송 등)
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(규칙, 구조, 경향 및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정보분석"이라 한다)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
 - 1. 대학·연구기관·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나 단체에서 수행할 것
 - 2. 교육 · 조사 · 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
 - 3.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
 - 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는 자는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물을 보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저작권 및 그 밖

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및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6조제1항 중 "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"를 "제35조의3, 제35조의4 및 제35조의6"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단서 중 "제35조의4"를 "제35조의5"로 한다.

제62조제2항 중 "제35조의5"를 "제35조의6"으로 한다.

제87조제1항 중 "제35조의5"를 "제35조의6"으로 한다.

제94조제1항 중 "제35조의4, 제35조의5"를 "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6 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보분석을 위한 복제·전송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의5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정보분석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5조의5(교육·조사·연구 목
	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
	전송 등) ① 컴퓨터를 이용한
	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하여 추
	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
	하기 위하여 다수의 저작물을
	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(규
	칙, 구조, 경향 및 상관관계 등
	의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를 말
	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정보분
	석"이라 한다)하는 것으로서
	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
	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
	안에서 저작물을 복제·전송할
	<u>수 있다.</u>
	1. 대학 • 연구기관 • 비영리민간
	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할 것
	2. 교육・조사・연구 등 비상업
	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
	<u>용할 것</u>
	3.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
	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

제35조의5(저작물의 공정한 이용) 제35조의6(저작물의 공정한 이용)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,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 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 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 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 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6조(번역 등에 의한 이용) ① 저 제24조의2, 제25조, 제29조, 제3 0조,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 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을 번역·편곡 또는 개작하여

것

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	을 복
제하는 자는 정보분석을	위하
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	-제물
을 보관할 수 있다. 이 경우	우 저
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	따라
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	방지
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및	보안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필요
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

①제35조의5
② (현행과 같음)
에36조(번역 등에 의한 이용) ①
제35조의3, 제35조의4

및 <u>제35조의6</u>-----

이용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7조(출처의 명시)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6조,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,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- 제62조(배타적발행권의 양도·제 한 등) ① (생 략)
 -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, 제24조, 제25 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, 제26조 부터 제28조까지,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, 제35조제2항 및 제 3항, 제35조의2부터 <u>제35조의5</u> 까지,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 한다.
- 제87조(저작인접권의 제한)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·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, 제24조, 제25조제 1항부터 제5항까지, 제26조부터

· ② (현행과 같음) 제37조(출처의 명시) ①	
제35조의 <u>5</u>	
제62조(배타적발행권의 양도· 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	제
②	
	 ふ
<u>의6</u>	<u></u>
제87조(저작인접권의 제한) ① 	

제32조까지, 제33조제2항, 제34 조, 제35조의2부터 <u>제35조의5</u>까 지,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 다.

② (생 략)

제94조(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 지리제한) ① 데이터베이스제작 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,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, 제35조의2, 제35조의4, 제35조의5,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.

② (생 략)

제35조의
<u>6</u>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세94조(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
리제한) ①
<u>제35</u> 조의4부터 제
35조의6까지
② (현행과 같음)